

「투자권유준칙」 개정사항

소관부서	경영기획본부(마케팅)	비 고
개 정 일	2020. 4. 1	
시 행 일	2020. 4. 1	

□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7조 (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9.6, 2016.2.16)</p>	<p>제7조 (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,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(서면, 전자우편,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)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4.1, 2019.9.6, 2016.2.16)</p>	<개정>
<p>제13조 (설명의무)</p> <p>⑧ <신설></p>	<p>제13조 (설명의무)</p> <p>⑧ 제①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,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[별지 제7호] 및 [별지 제8호]에 따라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투자자: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, 최대 위험 등</p> <p>나. 임직원등: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, 설명내용 등</p> <p>설명 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·임직원등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(신설 2020.4.1)</p>	<신설>
<p>제24조 (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4조 (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)</p> <p>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3조의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, 전산자료,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</p>	<신설>

	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신설 2020.4.1)	
<신설>	[별지 제7호] 및 [별지 제8호]	하단 참고

[별지 제7호] 투자(일임, 자문)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(고객용)(신설 2020.4.1)

투자(일임, 자문)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

고객보관용

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투자위험등급

※ 계약자명: _____

※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계약담당자: 부서 및 직위 성명 (인 또는 서명)

본 확인서의 작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(설명 의무)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(명의 무)에 의거,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- 투자판단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 서면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계약은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**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,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**
- 계약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크므로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면밀히 판단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계약은 **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**
- 당사가 운용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, 당시의 투자전략은 시장에 맞도록 조정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이전에 **투자대상 자산, 보수체계(기본보수, 성과보수)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숙지**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계약과 관련한 위험은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.
 - ✓ 시장위험: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
 - ✓ 거시환경 위험: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변동위험
 - ✓ 개별기업 위험: 기업의 영업환경,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의 변화에 따른 위험
 - ✓ 유동성 위험: 금융투자상품의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 위험
 - ✓ 기타 위험(_____)
- 계약기간 중 일부해지 및 설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분산투자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계약해지에 따라 당사의 운용일까지의 성과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계약해지에 따른 보유자산 매도 시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[별지 제8호] 투자(일임, 자문)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(회사 및 고객용)(신설 2020.4.1)

투자(일임, 자문)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

회사 및 고객보관용

- ※ 대상 계약명: _____
- ※ 투자위험등급: _____
- ※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계약담당자: 부서 및 직위 성명 (인 또는 서명)

*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객 확인사항

1. [투자권유문서]를 [받았음, 받지 못함, 교부를 거부 하였음]
2. [투자원금 손실]이 [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,
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]
3.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[투자자]에게 있음을 설명 [받았음, 받지 못함]
4. 이 계약은 [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]
5. 투자에 따른 [절대적 위험 및 상대적 위험도]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
[들었음, 듣지 못함]
6. 투자결정시 [주요위험], [유의사항], [보수체계]등에 대해 설명을
[듣고 이해했음]

계약담당자 확인사항

[상품 위험도], [최대손실 가능성], [수수료], [환매조건] 등을 설명하였고 고객
이 해당 내용을 [충분히 이해] 하였음

20 년 월 일

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: (사업자등록번호)	계약자 성명	(인 또는 서명)
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:	대리인 성명	(인 또는 서명)